

## 조류인플루엔자(AI)

#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경남·북 지역의 추가 발생 예방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경찰청에 5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모든 오리·닭 운송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한 길거리 단속과 관련해 지방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 방역강화 배경

- 최근 발생한 경남·북 지역 AI의 추가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종식을 위한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 추진

※ 5월 15일 개최된 “먹거리 안전 확보 T/F 2차회의”(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 방역강화 조치사항

- 도축장을 출하되는 모든 닭·오리는 AI 검사 및 증명서 휴대
- 모든 닭·오리 운송차량의 세척·소독 여부에 대해 단속 실시
-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 제한 및 계분 비료공장·계분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여부 단속
-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의 자진 폐쇄 유도

- 공동방제단(15천명)을 동원, 닭·오리농장 일제 소독(매주 수요일)
- 예찰요원(3천명)을 동원, 모든 닭·오리농장 1일 1회이상 예찰

### ▣ 방역강화 조치사항별 추진내용

- 1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오리는 AI 임상검사 및 증명서 휴대 의무화 : 2008년 5월 19일 ~ 마지막 경계지역 해제시 까지

• 시행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8호 (2008년 5월 16일)

#### • 시행내용

-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오리의 소유자
- 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 : 2008년 5월 16일부터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시·군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시·도, 시·군, 지역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읍면별 예찰요원(3천명)을 통해 해당 농장에 대한 전화안내 설명
- SMS 발송, 도축장 현수막 설치 등 각종 홍보 실시
  - 농협·양계·계육·오리·토종닭 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회원 지부 등에 고시 내용을 송부하고,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시·군은 관할 도축장 경영자 등 관계자에게 고시 내용을 직접 설명 및 협조 당부
- 도축장 경영자는 고시 시행전, 출하 예정인 농가 및 운송업자에게 AI 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사전 홍보
- 검사신청 및 검사증명서 발급 절차
  - 도축용 닭·오리를 출하하는 농가는 출하 3일전까지 시·군에 AI 임상검사 신청(전화, 서면 등)
  - 시·군은 소속 가축방역관, 공익수의사,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임상검사 실시(검사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 준수)
  - 임상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은 해당 닭·오리 농가에게 AI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사증명서 발급 대장을 작성·보관
- 검사증명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위변조 복사 방지 용용지 사용
  -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는 운송업자에게 검사증명서를 인계하고, 운송업자는 도축장 출하시 검사증명서를 도축장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 자체검사원은 AI 검사증명서 확인 후, 도축검사 및 도축을 허용
-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한 조치
  - 도축장 자체검사원은 검사증명서 미휴대자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
  - 검사증명서 미휴대자를 신고 받은 시·군은 해당 운송업

-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 닭·오리 소유자에 대해서도 검사 명령 위반으로 소유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처분토록 조치
- ※ 시·군은 매일 1회 이상 도축장별 닭·오리 검사증명서 휴대 상황 점검

## ❷ 모든 닭·오리 운송차량의 소독 실시여부, 길거리 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08년 5월 19일 ~ 마지막 경계지역 해제시까지
- 주관기관: 시·도, 시·군(협조: 지방경찰서)
  - 자체체는 기 편성 운영 중인 재해시장 소독 단속반을 활용, 단속을 실시하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단속 방안을 강구
- 단속대상: 닭·오리 운송차량
- 단속내용: 운송업자의 차량 소독 및 소독 실시기록부 소지여부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 가축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해 가축 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가축 운송업자는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③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 제한 및 계분

비료 공장·계분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여부 단속

- 단속기간: 2008년 5월 19일 ~ 마지막 경계지역 해제시 까지
- 주관기관: 시·도(시·군), 수의과학검역원
- 단속대상: 계분 비료공장, 계분 운반차량, 닭·오리 사육농가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 • 단속내용

- ▶ 계분 비료공장: 소독시설 구비 및 운영, 소독시 기록부 비치
- ▶ 계분 운반차량: 차량 소독, 소독 실시기록부 소지 여부
- ▶ 농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 이동제한 지도·점검  
※ AI 진정시까지 계분을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 운반,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병행

### ④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의 자진 폐쇄 유도

- (현행) 상설 재래시장의 닭·오리 출하는 허용하되, 일일 소독·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
- (강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AI 진정시까지 자진 폐쇄 유도
  - 폐쇄가 안된 시장에 대해서는 매일 관계 공무원이 출장, 소독 점검 및 검사 지속강화. 반드시 판매시설의 분뇨·음수를 수거해 정밀검사 의뢰

### ⑤ 공동방제단(15천명)을 동원, 전국 닭·오리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매주 수요일)

- 공공시설 및 소, 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던 소독을 닭·오리 사육농가로 전환 실시

### ⑥ 환경 오리농법 시행 자체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 대상: 4,495농가, 50여만 마리

